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의약품, 식품, 화장품, 제조물책임센터(PL) 설립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계는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시행에 대비하여 보건산업 제조물 결함관련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을 신속·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재판외 분쟁해결기구인 「PL센터」를 설립·운영하기로 하였다. 「화장품 PL센터」와 「의약품 PL센터」가 6월 28일, 「식품 PL센터」가 7월 2일 현판식을 갖고 각 업종별 PL관련 상담·알선 및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자 등이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짐(제조물책임: 무과실책임제도도입)을 규정한 것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2000년 1월 제정 공포).

- 이들 업종별 PL센터는 각 업종별 단체(협회)에 설립되고 '사무국'과 '분쟁조정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됨.

- 사무국: 품질 및 PL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알선, 정보제공 등 업무 수행
- 분쟁조정위원회: 법률전문가, 기술전문가, 소비자전문가가 각 1인 이상 참여하여 구성되고 분쟁조정업무 수행

- 이들 업종별 PL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보건산업 제조업자와 소비자는 PL분쟁 발생시 재

판에 따른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각 제조업자는 PL센터에 접수된 제조물 사고 관련 정보를 제품안전 관리에 즉각 반영하여 PL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됨.

- 업종별 PL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의료기기 및 건강보조식품은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에 설립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토록 하고, 중소기업 PL단체보험에 가입토록 적극 유도하고자 함.
- 중소기업 PL단체보험은 일반 PL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20% 저렴함.

고혈압성질환 등 11개 만성질환, 요양급여일수 예외 적용

보건복지부는 2001년 12월 31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요양급여규칙)』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한 가운데, 요양급여 일수 산정에서 예외로 적용할 질환으로 상시 또는 장기투약이 필요한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등 11개 만성질환을 선정하고, 그 적용 범위를 정하여 10일자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20-40호)하고 2002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장기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간연장 승인 요청을 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진료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 급여일수를 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급여는 급여일수 연장 사전승인제를 시행중이다.

- 이에 따라 『요양급여 규칙』 제8조의 3(요양급여일수 산정방법)의 제1항 3호에 의해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등 이번 고시에 정한 11개 만성질환 중 2가지 이상의 질환으로 중복해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는 요양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됨.
- 또 제1항 4호에 의해 11개 만성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중에 감기 등 다른 질환으로 요

양급여를 다시 받을 경우 그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도 제외됨.

푸드뱅크운영관리 DB시스템 전국 가동

보건복지부는 '푸드뱅크 운영관리 DB시스템'을 개발하여 2002년도 7월 1일부터 전국 200여 개소의 푸드뱅크 및 인터넷을 통해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다. 금년 5년제로 접어든 푸드뱅크 사업은 푸드뱅크 운영관리업무의 전산화로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로써 신뢰를 바탕으로 한 푸드뱅크의 도약적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동 DB시스템은 전국 200여 개소의 푸드뱅크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각종자료를 확인·활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기탁자는 본인의 기탁물품의 분배현황을 확인하고, 이용자도 본인의 푸드뱅크 이용현황 확인 등이 가능하게 됨.
- 푸드뱅크 관리 DB시스템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이용대상자 관리, 기탁자 관리, 자원봉사자 활용, 각종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푸드뱅크에 관련된 각종 통계는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됨.
- 푸드뱅크는 식품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식품을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이며, 식품을 기탁하고 싶은 사람이나 필요한 곳은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국번없이 1377'을 누르면 가까운 푸드뱅크와 연락할 수 있음.
- 그간 푸드뱅크에 기탁된 식품은 1998년 28억원, 1999년 52억원, 2000년 72억원, 2001년 163억원 상당으로 도움을 받는 어려운 이웃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 또한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자에게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탁전액(장부가액)에 대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기탁자에게는 현판 증정, 포상, 간담회 등을 통해 격려와 지원을 하고 있음.

일부 희귀난치성질환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초진진찰료 산정기간 연장

보건복지부는 2월 15일(금)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터너증후군 등 5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병원급이상 40~50%)을 입원시 본인부담률인 20%로 낮추기로 의결하였고, 또한 동 회의에서는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초진진찰료 산정기간을 질환에 따라 90일까지 연장하였다.

- 그간 위염, 위궤양과 같이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30일 이후에 내원시 초진진찰료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90일 이후에 재방문 시 초진진찰료를 적용받게 의결하여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비용부담은 경감함.

한-네덜란드 사회보장협약 서명

-발효시 네덜란드 파견 한국 근로자 5년간 네덜란드 사회보험료 면제받아-

2002년 7월 3일(수)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식 서명되었다. 이 협약은 양국이 자국의 사회보장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상대방 국민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고, 본국에서 고용되어 5년이내의 기간으로 상대방에 파견되는 경우 상대방의 사회보험적용을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 본 협약이 발효되면 네덜란드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5년이내의 기간 동안 네덜란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따라서 파견 근로자 본인과 근로자를 파견한 우리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그동안 네덜란드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에 사회보험료를 이중 납부해 옴.

- 네덜란드 주재 우리 근로자 및 기업의 부담 경감액은 연간 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네덜란드 사회보험료율: 39.4%)됨.
- 2001년말 현재 네덜란드 주재 기업은 LG전자,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등으로 근로자는 110명임.
- ※ 한국 주재 네덜란드 근로자(2001년말 46명) 부담 경감액: 연간 1억 5천만원
- 정부는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과의 사회보장협정(협약)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주요국들과의 사회보장협약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비정규직근로자 사회보험 확대 추진단 출범

5인 미만 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무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확대추진단」을 구성하여 7월 3일 오후 2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안양지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

미신고 복지시설 조건부 신고 개시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양성화하여 시설생활자에 대한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조건부 신고 및 일제 실태조사를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시행한다.

- 조건부 신고 접수대상은 2002년 6월 14일 현재 운영중에 있는 미신고 생활시설로서 10인 이상 시설의 경우 거실, 화장실, 조리실, 비상재해시설 등의 설비와 시설장(1명), 생활보조원(1명) 등의 인력이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고,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시설 및 생활자 현황을 해당 시·군·구 사회복지시설 담당과에 신고하면 됨.

- 보건복지부는 조건부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신고유예기간이 부여하고, 실태조사후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선별하여 개·보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 신고를 위한 시설장 자격 유예(5년) 및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 보건복지부는 조건부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신고유예기간이 부여하고, 실태조사후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선별하여 개·보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 신고를 위한 시설장 자격 유예(5년) 및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미신고 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년 8월까지 시설 신고기준을 낮춰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그동안 정부지원이 되지 않았던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분야에 대해 정부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저소득층 자활지원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에 자활후견기관 1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발표하였다. 금년 자활후견기관 지정에는 전국적으로 109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며, 자활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심사위원이 참여한 심사위원회가 신청기관의 자활사업 수행경험 여부 등 수행능력과 지역의 자활사업 수요를 고려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현지실사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개 기관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자활후견기관은 기존 165개 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76개로 확대되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자활사업 수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활후견기관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번에는 특히 시·군·구 및 신청기관의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활후견기관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자활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임.